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33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신장식 · 이해민 · 강경숙
서왕진 · 정춘생 · 최혁진
황운하 · 김선민 · 차규근
박상혁 · 강준현 · 백선희
한창민 · 윤종오 · 서미화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 임명 절차는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권 문제가 점차 전문화·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지명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
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
고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의2 신설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명”을 “5명”으로, “11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4명”을 “7명”으로, “2명”을 “4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람”을 “사람 중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 “사람 중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를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균형있게 선출·지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할 위원 후보자(연임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지명할 때마다 추천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출 또는 지명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6명.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2.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4명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선출·지명할 위원(선출·지명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원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 명단을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2 중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를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인권위원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u>11명</u> 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5명</u> ----- ----- <u>15명</u> -----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 -----.
1. 국회가 선출하는 <u>4명</u> (상임위원 <u>2명</u> 을 포함한다)	1. ----- <u>7명</u> ----- --- <u>4명</u> -----
2. 대통령이 지명하는 <u>4명</u>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 <u>5명</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 ----- ----- ----- ----- ----- -----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1. ----- ----- -----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
던 사람

3.·4. (생 략)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
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
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
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⑧ (생 략)
<신 설>

-----사람 중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

사람 중 인권 관련 활동에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4. (현행과 같음)

④ -----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
보자 중에서-----

-----.
이 경우 국회, 대통령 또는 대
법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균형있게 선출·지명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할 위원 후보자(연
임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추
천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

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 · 지명할 때마다 추천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출 또는 지명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6명.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2.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 단체가 추천하는 4명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선출·지명할 위원(선출·지명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원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 명단을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 보호관은 <u>제5조제2항제2호에</u> <u>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u> <u>위원이 겸직한다.</u>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 ----- <u>제5조제2항제1호에 따</u> <u>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u> <u>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u>
--	--